

朝鮮 前期 原從功臣錄券의 體制 研究*

A Study on the Wonjong Gongsin Nokgwon System
in the Early Joseon Dynasty

진 나 영 (Jin, Na Young)**

◁ 목 차 ▷

- | | |
|----------------------------|-----------|
| 1. 緒 論 | 3.3 卷末 分析 |
| 2. 朝鮮 前期에 發給된
原從功臣錄券 現況 | 4. 記述 形式 |
| 3. 錄券의 體制 分析 | 4.1 記述 方式 |
| 3.1 卷首 分析 | 4.2 削籍 部分 |
| 3.2 本文 分析 | 5. 結 論 |
|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조선 전기에 발급된 공신녹권의 체제를 卷首·本文·卷末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을 세분하여 녹권의 편성 체제가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권수는 卷首題, 受給者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은 대체적으로 공신책봉에 관한 王命을 받은 날짜와 奉命者의 직함과 성명, 녹권의 반사사유를 기재한 왕의 傳旨,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포상의 시행에 관한 왕명을 받은 날짜 및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 등급별 공신의 포상규정 및 특전을 명시한 왕의 전지로 구성되었다. 권말은 녹권의 頒賜를 주관한 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에 속한 구성원들의 직함과 성씨 또는 성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녹권에서는 手決이 있었다. 연구결과, 녹권의 체제는 대체로 동일하나 녹권의 발급시기 혹은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要語: 원종공신녹권, 공신녹권, 공신

* 이 논문은 진나영의 박사학위논문인 “朝鮮 前期 功臣錄券의 書誌學的 研究”(중앙대학교, 2014)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jny415@naver.com)

접수일: 2015년 11월 27일 최초심사일: 2015년 12월 2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21일

<ABSTRACT>

This study differentiated the system of the 'royal certificate granted to the secondary meritorious subjects by the king' (Wonjong Gongsin Nokgwon, 原從功臣錄券)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nto the heading, the main text, the closing, and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ilation of the each part. The heading consists of; the title of the heading and the titles/names of the grantees. The main text in general consists of; the date of the King's order regarding the installation of the meritorious subjects, the title/name of the person who received the King's order on the installation, the statement of the King on the reason of the royal certificate grant, the titles/names of the meritorious subjects by class, the date of the receiving the King's order for the enforcement of the award, the title/name of the person who received the King's order on the award and the statement of the King on the award regulation and privileges of the meritorious subjects by class. The closing consists of; the name of the institution which enforced the grant and the title/family-names/full-name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belonging to the institution. Some royal certificates have signatures. It has been confirmed by the result of this study that the royal certificate systems were similar in general; howe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dependent on the grant date or the institution which enforced the grant.

Key words: Wonjong Gongsin Nokgwon, Gongsin Nokgwon,
meritorious retainer

1. 緒論

功臣錄券은 국가의 대소사에 功績을 쌓은 사람들을 공신으로 冊封한 후, 이들의 공훈을 등재하여 각 공신에게 分給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신제도는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이미 공신을 책봉하여 녹권을 발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것이 점차 제도화되어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확립되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原從功臣 제도가 새로 성립되어 原從功臣錄券을 발급하였다. 특히나 조선 前期에는 국가의 건국 이래로 수많은 정변이 있어났기 때문에 공신 관련 제반사항 또한 수차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권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선 전기에 발급된 녹권은 그 시기가 오래되어 현존본이 희귀한 실정이며, 당시 책봉된 공신의 인원수는 後期에 비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발급된 녹권의 수량 또한 적어 조선 전기에 발급된 녹권의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신녹권은 왕의 下命에 따라 발급된 公文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일정한 체제와 양식에 따라 기재되었다. 그러나 녹권의 체제와 양식은 시기에 따라 간사방식을 달리하여 녹권을 제작하여 반사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녹권의 발급시기 또는 발급기관별 공신녹권 체제의 비교·분석을 위해 녹권을 卷首·本文·卷末의 3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의 편성 체제를 세분하여 녹권의 체제가 지니는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선 개국 후 격변기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조선 전기에 발급한 원종공신녹권 7종을 대상으로 각 녹권의 體制를 분석한 후, 녹권간의 체제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朝鮮 前期에 發給된 原從功臣錄券 現況

본 연구에서는 조선 전기에 발급된 원종공신녹권 13종 중 현전하지 않는 녹권 6종¹⁾을 제외한 7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녹권들의 현황을 녹권이 반사된

기시의 빠른 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朝鮮 前期에 發給된 功臣錄券의 現傳本 現況

連番	功臣錄券種類	頒賜 年代	版種	發給 機關	裝訂 形態	所藏處
1	開國原從功臣錄券	1395- 1397	木活字	功臣 都監	卷子本	동아대학교
2	佐命原從功臣錄券	1411	筆寫	吏曹	卷子本	궁중유물전시관
3	佐翼原從功臣錄券	1455	金屬活字	吏曹	線裝本	국립중앙도서관
4	佐理原從功臣錄券	1471	金屬活字	吏曹	線裝本	성암고서박물관
5	靖國原從功臣錄券	1507	金屬活字	吏曹	線裝本	성암고서박물관
6	光國原從功臣錄券	1591	金屬活字	功臣 都監	線裝本	개인소장
7	平難原從功臣錄券	1591	金屬活字	功臣 都監	線裝本	국립중앙도서관

조사한 결과, 조선 전기에 발급된 원종공신녹권 현전본 7종 중 필사본은 초기 태종대에 발급된 『좌명원종공신녹권』 1종이고, 나머지는 목활자 또는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 또한 조선 초기 태조-태종대의 녹권은 장정형태가 권자본이나 세조대 이후의 녹권은 선장본인 특징을 보였다. 녹권에 기재된 발급기관은 태조대 녹권인 『개국원종공신녹권』과 선조대 녹권인 『광국원종공신녹권』·『평난원종공신녹권』은 공신도감이었고, 세조-중종대 녹권 4종은 吏曹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시기별 녹권의 특징을 기준으로 녹권의 체제를 분석하였다.

3. 錄券의 體制 分析

조선 전기에 간사된 공신녹권을 편성하고 있는 체제를 분석하기 위해 녹권을

- 1)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6종은 『定社原從功臣錄券』, 『靖難原從功臣錄券』, 『敵愾原從功臣錄券』, 『翊戴原從功臣錄券』, 『定難原從功臣錄券』, 『衛社原從功臣錄券』이다.

크게 卷首·本文·卷末의 세 부분으로 구분²⁾하고, 각 부분의 편성 체제를 세분하여 녹권의 편성 체제가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녹권의 체제는 대체로 동일하나 녹권의 발급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녹권의 체제 분석은 녹권의 발급기관을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3.1 卷首 分析

3.1.1 吏曹 發給 錄券

연구대상 녹권 7종 가운데 이조에서 발급한 녹권은 『좌명원종공신녹권』, 『좌익원종공신녹권』, 『좌리원종공신녹권』 및 『정국원종공신녹권』 등 4종이었다, 이 녹권들은 발급시기가 각각 태종대와 세조대, 성종대 및 중종대였고, 이들은 다시 장정 형태를 기준으로 권자본과 선장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권자본은 태종대에 발급된 『좌명원종공신녹권』 1종뿐이고, 나머지 3종은 선장본이었다. 장정 형태에 따라 녹권 4종의 권수 체제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녹권 내용을 권수 체제 항목에 따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吏曹 發給 功臣錄券의 卷首 體制

裝訂 形態	功臣錄券	첫 行	受給者		
			職銜	姓名	本貫
卷子本	佐命原從 功臣錄券	吏曹	前通訓大夫 判司宰監事	李衡	振威
線裝本	佐翼原從 功臣錄券	吏曹	承義校尉忠佐衛司前令副司直	裴文郁	興海
	佐理原從 功臣錄券	吏曹	通訓大夫行敦寧府主簿	宋暎	冶爐
	靖國原從 功臣錄券	吏曹	正郎	金錫弼	未載

2) 공신녹권의 체제는 친혜봉, “義安伯李和 開國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3輯 (1988), 25-67에서 제5장 본문분석에 해당하는 부분과 임기영, “壬辰倭亂 直後 賜給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의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2002)에서 제시한 녹권의 체제 구분을 참조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이조에서 발급한 녹권의 첫 행에서는 발급기관인 吏曹을 기재하였고, 다음 행에는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을 넣었다. 직함을 쓸 때에는 겸직이나 전직의 직함까지 모두 쓰고 있었으나, 『정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이와 달리 간단하게 수급자의 직함을 기재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난 까닭은 해당 공신의 수가 많았으므로 당시에 맡고 있던 관직만을 간단하게 기재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성명 아래에는 수급자의 본관을 썼는데 ‘本○○’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태종대 이전에 발급된 녹권에서 ‘本’ 자만 기재하고 그 밑에 본관을 기록하고 있는 예와 같아 이전의 체제가 계속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본관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이로 보아 권수의 체제도 『정국원종공신녹권』이 반사된 중종대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수 체제를 구성하는 발급기관, 직함, 성명, 본관의 요소 중에서 발급기관을 제외한 직함, 성명, 본관에 대한 내용은 공신들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녹권이기는 하지만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은 인쇄가 아니라 필사되었다.

3.1.2 功臣都監 發給 錄券

연구대상 녹권 7종 중에 『개국원종공신녹권』, 『광국원종공신녹권』과 『평난원종공신녹권』 등 3종은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녹권이었다. 공신도감은 공신에 대한 제반사무를 관장하는 임시관청이므로 녹권의 발급 또한 이 기관의 업무였다. 이들 녹권들을 위와 마찬가지로 장정 형태를 기준으로 권자본과 선장본으로 구분하여 권수 체제를 분석하였다.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녹권 3종을 대상으로 권수제와 수급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功臣都監 發給 功臣錄券의 卷首 體制

裝訂 形態	功臣錄券	첫 行	受給者		
			職銜	姓名	本貫
卷子本	開國原從 功臣錄券	功臣都監	前朝奉大夫 司宰副令	沈之伯	青松
線裝本	光國原從 功臣錄券	光國原從功臣錄券	右贊成	權檉	未載
	平難原從 功臣錄券	平難原從功臣錄券	僉正	劉鳳瑞	未載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공신녹권 3종 중 권자본 형태인 1종의 녹권 발급 시기가 조선 초기인 것이 특징이다.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녹권의 권수 체제도 이조에서 발급한 녹권과 마찬가지로 첫 행,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 그리고 본관으로 구성되었다. 이 녹권의 특징은 우선 첫 행에서 『개국원종공신녹권』은 발급기관인 ‘功臣都監’이라는 官名을 기재하였으나 선장본 녹권의 경우, 그 기관명을 대신하여 錄券名을 기록하였다. 또한 직함을 쓸 때에는 겸직이나 전직의 직함까지 모두 썼다. 이는 上記한 吏曹에서 발급한 녹권 가운데 중종대의 『정국원종공신녹권』을 제외한 『좌명원종공신녹권』을 비롯하여 『좌익원종공신녹권』과 『좌리원종공신녹권』에서의 형식과 같다.

중종대를 중심으로 전과 후의 녹권 체제 중 수급자의 직함과 본관을 기재하는 데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직함 부분에 前職 및 兼職명을 모두 기재하였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와는 달리 전직 및 겸직명을 생략한 채 당시의 직함만을 표기하였으며, 또한 이 녹권들에서는 수급자의 본관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본관을 표기함에 있어서도 중종대 이후에 반사된 녹권에는 수급자의 본관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로 보아 조선 초기에 반사된 녹권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관명이나 직함, 성명, 본관 등을 상세하게 적었으나, 후대에 발급된 녹권의 경우는 대개 신분이 낮은 노비까지도 책봉의 대상이 되어서 수급자에 관한 항목을 간략하게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本文 分析

3.2.1 吏曹 發給 錄券

吏曹에서 발급한 녹권 4종의 본문 체제에 있어 공신책봉을 명 받은 날짜와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 반사사유를 기재한 부분에서 가장 앞에 쓰인 語句, 기재된 공신의 수, 포상 시행을 위한 봉명일, 봉명자 관련 사항 및 포상규정, 포상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吏曹 發給 功臣錄券의 本文 體制

裝訂 形態	功臣 錄券	功臣册封 奉命日		頒賜 事由	記載된 功臣의 數		褒賞施行 奉命日		褒賞 規程	褒賞 施行
		奉命者			1等	總數	奉命者			
		職銜	姓名		2等		職銜	姓名		
卷子本	佐命 原從	永樂 9年(1411) 10月 21日		○	19		83	永樂 9年(1411) 11月 日		○
		知申事	金汝知	王旨	49	知申事		金汝知		
		景泰 6年(1455) 12月 20日		○	80	天順 3年(1459) 7月 15日		×	議政府	
都承旨	朴元亨	教旨	1,439	都承旨	尹子雲					
線裝本	佐翼 原從	成化 7年(1471) 8月 25日		○	64	1,059	成化 7年(1471) 8月 25日		○	吏曹
		都承旨	鄭孝常	傳旨	723		都承旨	鄭孝常		
	靖國 原從	正德 2年(1507) 4月 20日		○	418	3,340	正德 2年(1507) 4月 20日		○	吏曹
		都承旨	洪景舟	傳旨	1,906		都承旨	洪景舟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이조에서 발급한 권자본 녹권인 『좌명원종공신녹권』의 본문의 체제는 임금이 공신 책봉을 명하기 시작하면서 공신의 책봉을 비롯하여 공신의 등급 구분, 포상 규정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는 일로 구성되었다. 본문의 처음에는 공신책봉에 관한 봉명일과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봉명

일³⁾은 공신을 책봉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던 날짜를 의미하고, 봉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담당 관료를 말한다. 『좌명원종공신녹권』의 경우, 공신을 책봉하라는 명령을 받은 시기는 태종 11년(1411) 10월 21일이고, 지신사⁴⁾ 金汝知가 왕의 명을 받았다. 녹권을 반사하는 사유를 상세히 적고 있는데, 이 사유를 기재할 때 ‘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王旨’는 조선 초기 임금의 4품 이상의 문·무관 벼슬아치에게 주던 辭命으로, 세종 7년(1425)에 그 용어가 ‘教旨’로 변했다. 녹권 내에서 이런 용어의 변화를 살피는 것도 조선시대 공문서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녹권의 반사 사유를 기재한 후에는 해당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였는데, 이를 등급을 나누어 기록하였다. 『좌명원종공신녹권』의 경우에는 3등급으로 공신을 구분하였는데, 1등은 19명, 2등은 15명, 3등은 49명으로 모두 83명이 좌명원종공신으로 책봉되었다. 그 이후에는 포상시행에 대한 왕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하였고, 명을 받은 시기인 1425년 11월일과 명을 받은 사람의 직함과 성명을 기록하였는데 앞서 공신 책봉의 명을 받았던 지신사 김여지였다. 그 다음 내용은 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상세히 써놓았고 그 포상을 시행하는 기관을 일일이 적어두어 공신의 포상은 그 업무를 분장하여 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포상의 분담부서로는 공훈을 기록하는 일은 藝文館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田地의 字號를 정하여 아뢰는 일은 戶曹에서, 노비의 명단을 아뢰는 일은 宗簿寺 刑曹都官에서 맡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태조대에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吏曹에서 발급한 선장본 녹권 3종의 본문은 공신 책봉에 관한 봉명일 및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 녹권의 반사사유와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공신책봉과 포상을 시행할 기관 포상시행에 관한 봉명일 및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의 처음에는 공신책봉에 관한 봉명일과 봉

3) 봉명일은 承旨가 왕의 명령을 받은 날이며, 녹권의 인출은 王命이 하달되고 공신도감이 편성된 후에 이루어지므로 실제 녹권의 인출 시기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4) 조선시대 초기 代言司의 으뜸 벼슬 정3품으로, 1410년(태종 1)에 承政院을 대언사로, 都承旨를 知申事로, 승지를 代言으로 고쳤으나 1433년(세종 15)에 다시 도승지로 고쳤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3. 8. 23 인용] <<http://encykorea.aks.ac.kr/>>).

명자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봉명일은 공신을 책봉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던 날짜를 의미하고, 봉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담당 관료를 말한다. 3종의 녹권에서 공신책봉 및 녹권의 반사를 담당한 관직은 공통적으로 都承旨로 기재되어 있어 도승지가 이를 전적으로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앞에 이조에서 발급한 권자본 녹권인 『좌익원종공신녹권』의 봉명자 직함이 ‘知申事’이고, 이 관직이 세종 이후로 ‘都承旨’로 고쳤다고 하라는 『실록』의 기사 내용과 일치한다.⁵⁾

녹권의 반사사유는 선장본 녹권 3종 모두에서 기재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좌익원종공신녹권』과 『정국원종공신녹권』은 녹권의 반사사유를 시작에 ‘傳旨’를 쓰고 있는 반면, 『좌익원종공신녹권』은 ‘教旨’를 앞에 써 반사사유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물론 전지와 교지 모두 왕의 명령을 뜻하는 類義語이지만 녹권에 따라 단어를 다르게 기재하고 있었다. 세조대에 발급한 『좌익원종공신녹권』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종 7년(1425)에 바뀐 ‘教旨’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종이 동왕 25년(1443)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무릇 傳教하는 일은 모두 教旨라 칭하고, 그 細瑣한 일은 傳旨라 칭하고, 承旨가 역시 臣 아무개라고 서명하고 印을 찍어서 攸司에 내리도록 恒式을 삼으라.”하였다.⁶⁾

위의 『실록』 기사를 통해 ‘教旨’라는 용어 대신 ‘傳旨’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종 이후인 세조대의 녹권에서 ‘教旨’를 사용한 것과 성종대와 중종대의 녹권에서 ‘傳旨’를 사용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으나 위의 기사에서 표현한 세쇄한 일인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표현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권자본 녹권의 경우에는 ‘王旨’로 사용되었다.

반사사유 다음으로는 책봉된 1·2·3등의 공신들을 등급별로 그들의 직함과

5) 『世宗實錄』卷61, 世宗 15年 9月 辛丑條.

“改知申事爲都承旨, 諸代言爲承旨. 以南陽德爲左正言.”

6) 『世宗實錄』卷101, 世宗 25年 8月 辛亥條.

“傳旨承政院: 自今凡傳教之事, 並稱教旨, 其細瑣之事則稱傳旨. 承旨亦稱臣著名, 仍印之, 下攸司, 以爲恒式.”

성명을 나열하였다. 녹권에 기재된 등급별 공신의 수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좌익원종공신녹권』의 1등 공신은 80명, 2등 공신은 846명, 3등 공신은 1,439명으로 모두 2,365명이었다. 『좌리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1등 공신은 64명, 2등 공신은 272명, 3등 공신은 723명으로 모두 1,059명이 책봉되었다. 『정국원종공신녹권』에서 표기된 1등 공신은 418명, 2등 공신은 1,016명, 3등 공신은 1,906명으로 모두 3,340명이 기재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공신들은 3등급으로 구분되어 왕실의 친족이나 공훈이 큰 고위직의 사람들을 먼저 기재하고, 같은 직급이나 관직의 사람들을 기입하였다. 등급이 점점 낮아질수록 신분이 낮은 천민이나 노비가 책봉되었으며 공신들의 기재순서도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등급별 구분표시를 ‘…等乙良○○原從○等功臣’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녹권에는 이두문⁷⁾을 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고 등급이 바뀌기 전에 씌으로써 등급 구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특별한 표시가 없어 눈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공신책봉을 비롯하여 포상규정 및 특전을 시행할 기관을 명시하였는데, 『좌익원종공신녹권』에서는 그 기관을 議政府로 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던 반면, 『좌리원종공신녹권』과 『정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吏曹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포상 및 특전을 시행하도록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를 받은 날짜인 봉명일과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앞에 표기된 공신을 책봉하도록 한 봉명일과 봉명자에 관한 내용과 대부분 동일했으나 『좌익원종공신녹권』에서는 4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는 단순히 공신책봉 및 공신에 대한 포상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일 뿐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 정공신에게 반사된 敎書는 한문으로만 썼고, 녹권에는 이두문을 병용하였다. 이는 한문과 이두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한문에 비하여 이두문을 다소 낮게 평가하여 이두를 아전의 글로 여기고 국가의 주요 문서나 전적들에서는 이두를 사용하지 않고 한문을 사용하여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즉 왕이 직접 내리는 문서로서 교서와 공신도감에서 발급하는 녹권의 수급자 신분을 다르게 보아 녹권은 이두문을 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교서보다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임기영, “壬辰倭亂 直後 賜給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2), 10. 참조).

3.2.2 功臣都監 發給 錄券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녹권은 3종으로, 이 녹권들도 권자본과 선장본 등 2가지 장정 형태를 보였다. 공신도감 발급 녹권의 본문 체제를 살피기 위해 장정 형태에 따라 본문 체제를 내용에 따라 <표 5>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5> 功臣都監 發給 卷子本 錄券의 本文 體制

裝訂 形態	功臣 錄券	功臣册封奉命日		頒賜 事由	功臣數		褒賞施行奉教日		褒賞 規程	褒賞 施行
		奉命者			1等	總數	奉命者			
		職銜	姓名		2等		職銜	姓名		
卷子本	開國 原從	洪武 27年(1394) 2月 12日		○	-		282 ⁸⁾	洪武 30年(1397) 9月 11日		○
		左承旨	崔遠	王旨	都承旨	鄭澹				
線裝本	光國 原從	萬曆 19年(1591) 閏3月 初2日		○	137	871	萬曆 19年(1591) 閏3月 初2日		○	吏曹
		同副承旨	奇荅	傳旨	599		同副承旨	奇荅		
	平難 原從	萬曆 19年(1591) 閏3月 初2日		○	129	688	萬曆 19年(1591) 3月 21日		○	吏曹
		同副承旨	奇荅	傳旨	415		同副承旨	奇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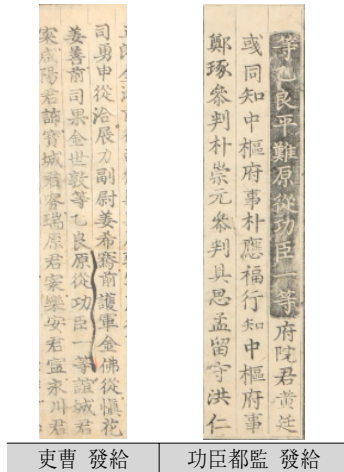
<표 5>에서 확인한 결과, 공신도감 발급 권자본 공신녹권의 본문 체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조 발급 녹권과 마찬가지로 공신책봉의 봉명일, 봉명자의 직함 및 성명, 공신을 책봉하고 녹권을 반사하는 사유를 적고, 공신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다만 『개국원종공신녹권』 중 목활자로 인쇄된 녹권은 공신의 직함과 성명을

8) 개국원종공신으로 책봉된 공신의 수는 1,327명이다. 위에서 연구 대상으로 정한 녹권은 완전한 목활자본으로 태조 6년(1397)에 인출된 沈之伯에게 반사된 『개국원종공신녹권』이다. 『개국원종공신녹권』은 3차례에 걸쳐 반사되었는데, 심지백의 녹권은 마지막에 반사된 것으로 이전에 책봉된 공신 이외에 추가로 책봉된 282명의 공신들에게 반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심지백 녹권에서는 실제로 직함과 성명이 기재된 공신은 76명이나 282명의 공신 중에서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여겨진다(문화재청, 『朝鮮初期 原從功臣錄券 解說』(대전: 문화재청, 2003). 참조).

기록할 때 다른 녹권과는 달리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필사한 점이 특이하다. 공신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한 후에는 이들에게 포상을 시행할 기관을 나타냈다. 대체적으로 녹권에서 포상 시행을 위한 기관은 일반적으로 공신도감이라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공신도감 발급 권자본 녹권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포상 및 특전의 업무를 분장하여 이를 각각 맡아볼 기관을 기재하였다. 포상시행과 관련된 봉명일, 봉명자의 직함 및 성명, 책봉된 공신들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을 포함하였다.

선장본 녹권 2종의 본문 체제는 권자본 녹권과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같은 해에 반사된 『광국원종공신녹권』과 『평난원종공신녹권』은 봉명일이 萬曆 19년(1591) 윤 3월 초 2일로 같고 봉명자도 동부승지 奇峇으로 같았다. 봉명자의 직함은 공통적으로 承旨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관직이며, 승지⁹⁾가 이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사사유 및 경위를 기재한 후에는 책봉된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어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고 있다. 등급을 구분하는 부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吏曹 發給 錄券과 功臣都監 發給 錄券의 等級區分 比較

9) 승지는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 등 6승지를 말하며 왕명의 出納을 담당하였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8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26).

<그림 1>과 같이 등급별 구분은 ‘…等乙良(○○)原從○等功臣’을 표기하였고, 吏曹에서 발급한 녹권에서와는 달리 陰刻으로 하여 등급별 구분이 확연히 드러나게 하였다.

3.2.3 褒賞規程 및 特典

1) 吏曹 發給 錄券

포상규정 및 특전은 이조 발급 녹권 4종 중 권자본인 『좌명원종공신녹권』에는 공신의 등급별로 포상이 주어졌는데, 1등 공신은 田地 30결, 노비 3口였고, 2등 공신은 전지 25결, 노비 2구이며, 3등 공신은 전지 15결이었다.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포상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선장본인 『좌익원종공신녹권』, 『좌리원종공신녹권』과 『정국원종공신녹권』 등 3종에도 포상규정 및 특전이 나타나 있다. 특히 『좌리원종공신녹권』과 『정국원종공신녹권』의 포상규정 및 특전은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吏曹 發給 線裝本 功臣錄券의 褒賞規程 및 特典

區分	褒賞規程		
		佐翼原從功臣	佐理·靖國原從功臣
一等功臣	본인	加一資	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承蔭宥及後世
	부모	封爵	封爵
二等功臣	본인	加一資	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부모	封爵	-
三等功臣	본인	加一資	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부모	-	-

區分	褒賞規程	
	佐翼原從功臣	佐理·靖國原從功臣
各等 通政 以上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物故人	依本等施行爲跡各追贈一資	依本等施行爲跡各追贈一資
犯罪作散人	並於本品叙用	並於本品敘用
在喪及無故作散人	加一資叙用	加一資敘用
永不叙用人	許通仕路	許通仕路
職牒收取人	並只還給	並只還給
妾子	限品安徐	限品安徐
公私賤口	免賤	免賤
私賤	公處奴婢 充給	-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종공신을 1, 2, 3등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그 포상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1등 공신에게는 각자 품계를 한 등급씩 높여주고, 그의 자손들은 조상의 음덕을 받아 후세에 전하도록 하였으며, 부모에게는 봉작을 주었다. 2등 공신에게는 각자 품계를 한 등급씩 올려주고, 자손에게는 조상의 음덕을 받아 후세에 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손들이 원하면 직무가 없는 벼슬[散官]을 주고, 만일 그 중에서 자손이 없는 사람에게는 형제나 사위 및 조카 중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직무가 없는 벼슬을 주도록 했다. 3등 공신에게는 1, 2등과 같이 각자 품계를 한 등급씩 높여주고, 자손들에게는 선조의 음덕을 이어서 후세에 전하게 했다. 이밖에 각 등급의 通訓大夫 이상에게는 그의 자손, 형제, 생질, 사위 중 한 사람에게 그가 원하면 직무가 없는 벼슬을 주고, 故人에게는 각각 법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며 품계를 한자리씩 추증하도록 했다. 喪 중이거나 無故로 벼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품계를 올려서 서용토록 하였다. 지은 죄가 사하여졌거나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散人]은 본 규정으로 인하여 다시 임용[叙用]토록 하였으며, 영원히 재등용할 수 없는 사람은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職牒을 회수당한 사람은 반환해줄 것이고, 첩의 자식은 규정 내에서 구제해주고,公私를 막론하고 종[賤口]의 신분인 사람은 다만 종의 신분을 면제해주었다.

좌익원종공신의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이 좌리·정국원종공신의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표 6>에 굵게 기울어진 글씨로 표시된 것들이다. 1등 공신의 자손 부분에서 좌익원종공신은 ‘자손 중에서 自願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좌리원종공신은 이와 같은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좌익원종공신 2등의 부모는 ‘봉작’되었으나 좌리원종공신은 부모에 대한 특전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좌익원종공신은 私賤인 경우 주인에게 公賤으로 보상하게 하였는데, 이 항목에 대한 특전이 좌리원종공신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처럼 좌리원종공신의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이 좌익원종공신의 것과 다른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좌리공신 책봉에 대한 심한 반대와 이전보다는 신분제도가 점차 확립되는 등의 사회적 요인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2) 功臣都監 發給 錄券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권자본 형태의 녹권의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을 확인한 바, 沈之伯에게 반사한 『개국원종공신녹권』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녹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책봉된 개국원종공신에게 大將軍 李和英의 예에 따라 田 15결을 각각 지급하라고 하였다. 또한 왕은 공신에게 父母妻封爵·子孫蔭職·宥及後世·立碑記功의 포상을 시행하라고 명했다. 부모처봉작은 공신의 부모와 처에게 품계를 주는 것이고, 자손 음직은 자손에게 음직을 주는 것이며, 유급후세는 공신과 그 자손이 죄를 범하더라도 사면을 영구히 미치게 하는 것이며, 입비기공은 碑를 세워 공을 기록하는 것이다.

선장본 녹권의 경우에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한 뒤에는 그들에 대한 등급별 포상규정 및 특전을 기재하였는데 2종의 녹권 모두 동일한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이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功臣都監 發給 線裝本 功臣錄券의 褒賞規程 및 特典

區分	褒賞規程 및 特典	
一等功臣	본인	加一資
	자손	子孫承蔭有及後世
	부모	封爵
二等功臣	본인	加一資
	자손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中從自願 加散官一資 無子孫者 兄弟婿姪中從自願 加散官一資
	부모	-
三等功臣	본인	加一資
	자손	子孫承蔭有及後世
	부모	-
各等通訓 以上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物故人	依本等施行爲跡追贈一資	
犯罪作散人	並於本品叙用	
在喪及無故作散人	加一資叙用	
永不叙用人	許通仕路	
職牒收取人	並只還給	
妾子	限品安徐	
公私賤	免賤	
逆黨·逆賊公事間事被罪者	官爵一款舉行安徐	

<표 7>과 같이, 원종공신을 1, 2, 3등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그 포상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그 포상규정 및 특전에 대한 내용은 앞서 살펴보았던 이조에서 발급한 녹권의 내용과 대부분 같으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逆黨·逆賊公事間事被罪者乙良官爵一款舉行安徐’로 逆黨에 관련이 있거나 역적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벼슬자리를 마련하여 천천히 중용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광국·평난원종공신의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이 이전의 것과 다른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는 사회적으로 관용적인 성격이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의 다른 포상규정 및 특전에 관한 내용은 이조에서 발급한 녹권의 것과 동일하였다. 포상을 시행하는 기관은 ‘吏曹’로 동일하였다.

3.3 卷末 分析

3.3.1 吏曹 發給 錄券

조사한 7종의 녹권 중 4종이 吏曹에서 발급한 녹권으로 이들의 권말 체제는 발급기관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기관인 吏曹 구성원들의 직함과 성씨를 기재하고 각각 자신의 성씨 아래에 수결을 하였다. 이조 발급 녹권의 권말 체제를 장정형태에 따라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표 8> 吏曹 發給 功臣錄券의 卷末 體制

裝訂形態	錄券名	發給機關 名稱	發給機關 構成員			手決	
			職銜	人員數	總數		
卷子本	佐命原從 功臣錄券	×	佐郎	3	11	○ (8명)	
			正郎	3			
			知事	1			
			左參議	1			
			右參議	1			
			判書	1			
			判事	1			
線裝本	佐翼原從 功臣錄券	×	佐郎	3	9	○ (2명)	
			正郎	3			
			參議	1			
			參判	1			
			判書	1			
	佐理原從 功臣錄券	×	×	佐郎	3	10	○ (3명)
				正郎	3		
				參議	1		
				參判	1		
				判書	2		
靖國原從 功臣錄券	×	×	佐郎	3	9	○ (1명)	
			正郎	3			
			參議	1			
			參判	1			
			判書	1			

<표 8>과 같이, 권자본 녹권인 『좌명원중공신녹권』의 권말 체제는 발급기관의 명칭을 쓰지 않은 채, 발급기관인 이조의 구성원들의 직함과 성씨를 나열하였다. 이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佐郎 3명, 正郎 3명, 知事 1명, 左參議 1명, 右參議 1명, 判書 1명, 判事 1명으로 모두 11명이 당시 좌명원중공신 책봉과 관련된 사무를 맡아보았다. 이들의 직함은 당시 겸직하는 직함도 모두 기재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더하고, 그 직함에 해당하는 품계와 성씨 그리고 이를 근거로 관원들의 성명을 조사·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佐命原從功臣錄券』에 記載된 吏曹 官員의 職銜과 姓氏 및 姓名

連番	職銜			姓氏	姓名	手決
1	佐郎	正6品	佐郎承議郎兼尙瑞注簿	柳	未詳	○
2			佐郎承議郎	李	未詳	○
3			佐郎承議郎	張	未詳	X
4	正郎	正5品	正郎通德郎知製教兼尙瑞司丞	鄭	未詳	○
5			正郎通德郎	權	未詳	○
6			正郎通德郎	許	未詳	○
7	知事	正3品	知事通政大夫丞政院申事經筵參贊官兼尙瑞尹修文殿直提學知製教兼春秋館修撰官兼判典祀寺事知內侍茶房事	金	金汝知	X
8	右參議		右參議通政大夫	閔	未詳	○
9	左參議		左參議通政大夫修文殿直提學	禹	未詳	○
10	判書	從1品	判書推忠翊戴開國佐命功臣 崇政大夫 集賢殿大提學兼判禮賓寺事 星山君	李	李稷	○
11	判事	正1品	判事輸忠同德翊戴佐命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政丞修文殿大提學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昌寧府院君	成	成石璘	X

그 임명을 자세히 보면 좌랑과 정랑이 각각 3명씩 정해졌는데 좌랑은 정6품의 품계를 가진 유씨, 이씨, 장씨로 구성되었으며, 장씨를 제외하고 각각 수결을 하고 있다. 정랑은 정5품의 품계로 정씨, 권씨, 허씨가 각각 수결을 하였다. 지사는 정3품으로 통정대부인 김씨이며, 위에 기재된 직함을 근거로 김씨를 조사하니 金汝知로

밝혀졌다. 김여지는 『좌명원종공신녹권』에서 기재된 공신 책봉에 관해 왕의 명령을 받은 봉명자로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 다음은 정3품인 우참의와 좌참의로 민씨와 우씨가 각각 수결을 하고 있고, 판서는 종1품으로 기재된 직함을 통해 이씨는 李稷임을 알았다. 그는 개국공신 3등이자 좌명공신 4등으로 책봉되었고, 성산군에 봉해진 인물로 본 녹권에 수결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1품인 판사는 성씨인데, 이 또한 직함을 근거로 조사하니 成石隣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국원종공신이기도 하며, 좌명공신 3등으로 책봉되었고 昌寧府院君에 봉해졌다. 이 녹권에는 성석린의 수결은 없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이조의 관원이 1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8명이 수결을 하였다. 다른 녹권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관원들의 수결이 있었다.

吏曹에서 발급한 선장본 녹권은 세조대부터 중종대 사이에 발급된 『좌익원종공신녹권』, 『좌리원종공신녹권』 그리고 『정국원종공신녹권』이다. 이들 녹권 3종의 마지막 張은 발급기관 구성원의 직함과 성씨만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결이 추가되어 있다. 3종의 녹권의 구성원의 직함은 위의 <표 14>에서 나타나듯이, 크게 좌랑·정랑·참의·참판·판서 등 5개의 관직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성된 관직이 동일하였다. 직급이 낮을수록 그 인원수가 많은 편이었고, 총 인원수는 9~10명이었다. 직함은 겹직 및 공신호를 모두 표기하고 있었고 직함 아래에는 구성원의 姓만을 기재하였다. 직함을 표기할 때 겹직 및 공신호를 모두 기재하고 있어 그 글자를 작고 정교하게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본문까지는 목활자로 인쇄하였지만 이 장에서는 목판으로 인출하였다.

吏曹에서 발급한 녹권에서는 성씨 아래에 수결이 있는데, 모든 구성원이 수결을 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녹권이어도 수결한 사람이 동일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부재 중인 구성원으로부터는 수결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녹권의 발급기관은 공신책봉 업무가 있을 때마다 임시로 설치된 기관이었던 만큼 다른 원종공신녹권을 보더라도 구성원 전부가 수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수결이 빠진 것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녹권이라도 수결의 有無가 각각 다르다. 위의 표를 보더라도 『좌익원종공신녹권』은 구성원 9명 중 2명, 『좌리원종공신녹권』은 구성원 10명 중 3명, 『정국원종공신녹권』은 구성원

9명 중 1명만이 수결을 하고 있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녹권을 발급하는 데에 관여한 관원들의 구성은 거의 유사하였으나, 녹권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특히 조선 초기 발급 녹권인 『좌명원중공신녹권』에서의 구성형태는 그 후에 발급된 3종의 녹권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지사 1명, 그리고 참의 직함의 관원이 우참의와 좌참의로 구분되어 각 1명씩 있으며, 3종의 녹권에서 보이는 참관 직함의 관원은 없었다. 또한 판사 직함을 지닌 관원을 1명 두었다. 나머지 3종의 녹권의 경우에는 그 구성이 같았고, 인원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급 시기에 따라 녹권과 관련된 제반의 변화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3.3.2 功臣都監 發給 錄券

공신도감 발급 권자본 형태의 『개국원중공신녹권』은 조선 초기에 발급된 것으로, 이 녹권의 권말 체제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功臣都監 發給 功臣錄券의 卷末 體制

裝訂 形態	功臣錄券	發給 機關名稱	發給機關 構成員			手決	
			職銜	人員數	總數		
卷子本	開國原從 功臣錄券	功臣都監	功臣 都監	錄事	1/2	18/24	○ (15명)
				判官	2/2		
				副使	2/2		
				使	2/2		
				判事	2/2		
			吏曹	佐郎	1/2		
				正郎	2/2		
				議郎	2/2		
				知曹使	0/1		
				典書	1/2		
				兼典書	0/1		
				判事	0/1		
			別監	3/3			

裝訂 形態	功臣錄券	發給 機關名稱	發給機關 構成員			手決
			職銜	人員數	總數	
線裝本	光國原從 功臣錄券	光國 功臣都監	堂上	4	7	X
			郎廳	2		
			監校郎	1		
	平難原從 功臣錄券	平難 功臣都監	堂上	4	7	X
			郎廳	2		
			監校郎	1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녹권의 권말 체제는 대체로 공신도감의 관여자가 각기 자신의 직함과 성을 적은 것 밑에 수결을 하여 녹권의 사급을 입증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하면 공신도감의 운영 및 그 구성 체계 그리고 규모를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권자본 형태 녹권의 권말에 기재된 사람들의 직함을 분석한 결과, 그 당시 녹권 발급에 관련한 사람들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에 발급된 녹권에서는 크게 공신도감 관원과 吏曹 관원 및 별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각각의 인원수는 공신별로 달리 나타났다. 또한 각 녹권에서는 정해진 관원의 인원수에 맞게 해당 관원을 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개국원종공신녹권』에서 이조의 관원 중 좌랑은 2명으로 정했는데, 녹권에서는 1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1명은 空欄으로 두었다. 이러한 예를 다른 녹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정해진 인원수에 맞게 관원을 임명했는지는 각 녹권에 대한 동일 녹권이 부족한 까닭으로 비교 연구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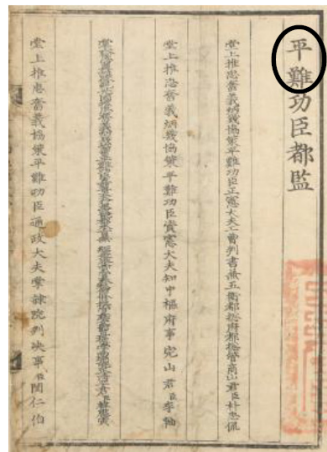
<표 10>을 토대로 각 녹권별 정해진 공신도감과 이조 및 별감의 관원들에 대한 인원의 구성과 수를 종합한 결과, 크게 공신도감과 이조의 관원들, 별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공신도감의 관원은 녹사·판관·副使·使·판사의 직함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각각 2명으로 정해졌다. 이조의 관원은 좌랑·정랑·의랑·知曹事·전서·겸전서·판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좌랑·정랑·의랑·전서는 각 2명씩 정해졌고 지조사·겸전서·판사는 각 1명씩으로, 별감은

3명씩 두는 것으로 정해졌다.

선장본 형태인 2종의 녹권은 가장 앞에 각각의 발급기관 명칭을 표기하고 있는데 공신후 2자 뒤에 공신도감을 붙이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광국공신도감과 같이 ‘光國’이란 2자의 공신후에 ‘功臣都監’을 덧붙여 발급기관명을 가장 첫 행에 기재하였다. 이 부분을 녹권에서 발췌한 것이 <그림 2>이다.



『光國原從功臣錄券』



『平難原從功臣錄券』

<그림 2> 功臣都監 發給 線裝本 錄券의 發給機關 名稱

<그림 2>와 같이 변화한 시기는 녹권 발급기관이 공신도감에서 이조로, 이것이 다시 공신도감으로 변한 때이며, 이 시기에 맞추어 공신녹권의 체제도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선장본 녹권의 경우에도 공신도감원의 직함과 성씨 혹은 성명을 표기하였다. 공신도감을 구성하는 관원의 직함을 기재함에 있어 권자본 녹권과 선장본 녹권 간 차이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조선 초기에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녹권의 경우는 공신도감원과 이조 관원이 모두 녹권 발급에 관여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 위의 2종의 녹권에서는 이조 관원이 빠진 공신도감 관원들로만 구성되었다. 인원수

또한 조선 초기의 경우인 약 25명 전후보다 약 1/3로 줄어든 7명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조선 초기에 반사된 권자본 녹권인 『개국원종공신녹권』과 선조대에 반사된 녹권인 『광국원종공신녹권』과 『평난원종공신녹권』을 비교해보았다. 조선 초기에 반사된 『개국원종공신녹권』은 다른 녹권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신도감 구성원으로서 공신도감과 이조의 소속 관원들, 그리고 별감으로 녹권의 발급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기재하였다. 공신도감원들의 직함을 살펴보면 좌랑·정랑·의랑·전서·판서 등으로 이조에서 발급한 녹권에 기재된 구성원의 직함과 비슷하였다. <표 10>에서 보듯이 녹권 발급의 관여자가 총 24명이었고, 그 관여자들의 성씨만을 표기하고 있다. 또한 수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24명의 구성원 중 15명만이 수결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선조대에 발급한 『광국원종공신녹권』과 『평난원종공신녹권』 등 2종의 녹권은 공신도감 구성원의 직함이 堂上·郎廳·監校郎으로 동일하였고, 그 인원수도 대략 4~7명으로 비슷하였다. 공신도감원의 직함 아래에는 성명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개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성씨만을 표기하였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성명을 명확히 나타낸 경우에는 수결을 생략하였다.

또한 2종의 선장본 녹권은 본문의 내용까지는 금속활자로 인쇄하였지만 권말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은 녹권을 발급하는 데 관여한 공신도감원들의 직함과 성명을 모두 기재하기 위해서는 작은 글자로 세밀하게 표기해야 했기 때문에 목판에 새겨 인출하였다.

4. 記述 形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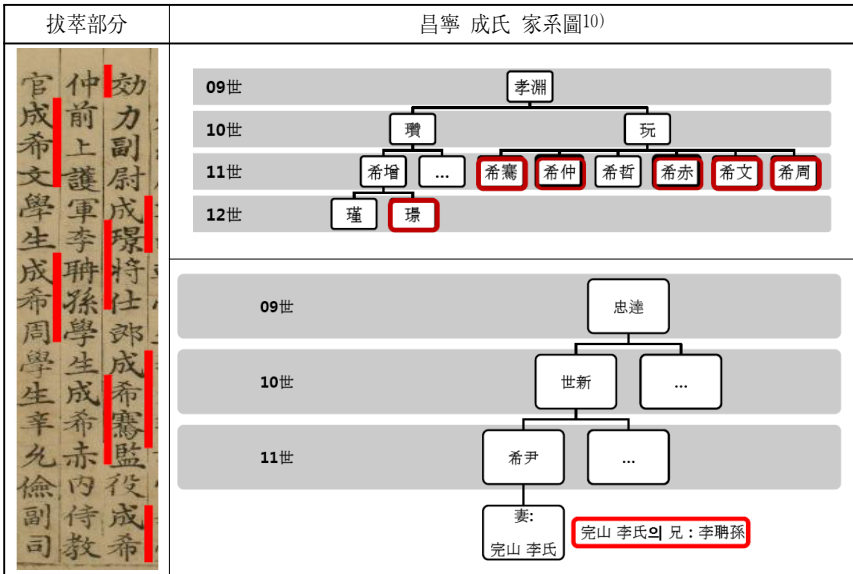
4.1 記述 方式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 이를 기재하는 순서나 기준은 모든 녹권에서 공통적으로 규칙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장의 기재

흐름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고위직에서 하위직의 순서로 기재하였고, 1등 공신에는 왕실의 친족 및 공훈이 큰 고위 관료가 많았으며, 2·3등으로 갈수록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공신으로 책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등급의 공신일 지라도 그 공신들을 기재함에 직위의 높고 낮음 구분 없이 그리고 신분이 서로 섞여 있어 특별히 정한 원칙 및 기준이나 순서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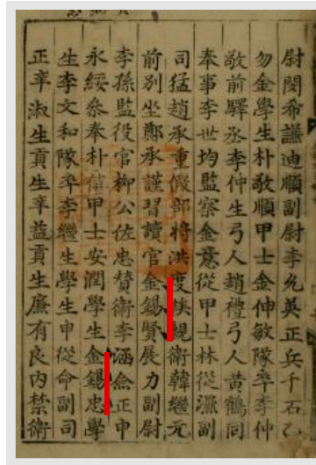
그러나 녹권의 일부에서는 같은 성씨의 같은 항렬자를 쓰는 사람들이 몰려서 기재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例示로서, 『정국원종공신녹권』의 해당 부분을 살펴본 결과, 昌寧 成氏의 경우 같은 등급인 1등의 한 부분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 해당되는 녹권의 부분과 그들의 관계도는 <표 11>과 같다.

<표 11> 同姓 家族 關係의 事例



10) 成綜護 編, 『昌寧成氏族譜』 (서울: 昌寧成氏大宗會, 1974).

<표 11>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한 성희건·성희중·성희적·성희문·성희주는 녹권에 공신으로 기재되었는데, 『창녕성씨족보』를 찾아보니 창녕 성씨 11세의 인물들로 형제 관계이다. 가장 앞에 기재된 효력부위 성경은 창녕 성씨 12세로 확인되었다. 성씨 가운데 李聃孫이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창녕 성씨 11세인 성희윤의 아내는 完山 李氏로, 그의 오빠가 이담손이다. 이를 정리하면 창녕 성씨 11세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후손 혹은 이 가문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병기되었다. 그러나 모든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이 모두 같은 가문끼리 기재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같은 집안사람끼리 나란히 기재된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이 같은 등급의 공신으로 책봉되었다고 하더라도 병기되지 않은 예도 있었다. <그림 3>은 『정국원종공신녹권』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다.



<그림 3> 同姓 家族이 併記되지 않은 事例

<그림 3>에서는 연구대상본 『정국원종공신녹권』의 수급자인 김석필의 형제 金錫賢과 金錫忠이 3등으로 기재된 부분으로, 이들의 직함과 성명은 병기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로 보아,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란히 기재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함을 기술함에 있어서, 녹권의 일부에서는 같은 소속 기관에 속한 관원끼리 나열된 경우도 있었다. 『광국원종공신녹권』에 이에 해당하는 예시를 찾아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同一 所屬에 屬하는 職銜 記述 例示

拔萃 部分	司譯院 所屬	
	職銜	姓名
	司譯院判官	申應澍
	司譯院副正	朴麟禧
	司譯院直長	洪明彥
	司譯院奉事	韓潤傑
	司譯院前銜	金吉孫
	司譯院前銜	趙安義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녹권에서는 곳곳에 같은 기관 소속의 공신을 병렬하고 있는 현상이 있었다. 즉 녹권에 사역원에 속하는 많은 공신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그 중 소수의 공신만이 녹권의 부분 부분에 기재되었다.

이상과 같이 녹권에서 공신의 직함과 성명을 기술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볼 수는 없었으나, 부분적으로 같은 성씨인 공신들이 병렬되어 있거나,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신들이 병렬되는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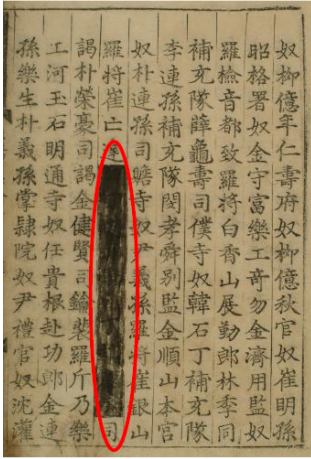
4.2 削籍 部分

『정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이미 기재된 공신의 직함과 성명을 후대에 먹색으로 지운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현전하는 『정국원종공신녹권』 2종의 녹권인 개인소장본과 성암고서박물관본을 대비하여 삭제된 인물을 조사한 결과, 개인소장본에는 13명, 성암고서박물관본에는 11명이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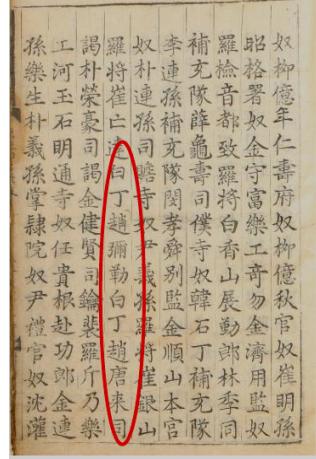
<표 13> 『靖國原從功臣錄券』의 削籍者 關聯 事項

連番	等級	職銜	姓名	削籍 該當事項	
				개인소장본	성암고서박물관본
1	1等	內禁衛	柳濱	○	○
2		正郎	尹龜壽	○	○
3		前大司成	李顥	○	○
4		牧使	李茁	○	○
5	2等	禦侮將軍	孫淡	○	○
6		彰信校尉	孫洧	○	○
7		學生	魏繼倫	○	○
8		習讀官	柳興祖	○	○
9	3等	學生	尹金碩	○	○
10		學生	尹磻	○	○
11		承義副尉	李仁傑	○	○
12		白丁	趙彌勒	○	X
13		白丁	趙唐來	○	X

2책의 녹권에서 11개의 削籍者 사항은 같으나 개인소장본과 달리 성암고서박물관본에서 지우지 않은 삭제자 2명은 백정이었던 趙彌勒과 趙唐來이다. 녹권의 소장처별 이들의 삭제 흔적의 유무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장본



성암고서박물관본

<그림 4> 錄券 所藏處別 削籍者 痕迹의 有無

공신의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은 공신 책봉 및 녹권의 발급이 있는 후에 역모 등의 이유로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조선시대에는 왕이나 나라를 위한 공이 있는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는 일을 공신 관련 진담 관서를 두어 공신 책봉을 비롯한 공신녹권의 반사, 공신 관련 행사를 마칠 때까지 업무를 하였다. 이때의 공신녹권은 공신을 책봉할 때 그 사실을 등재하여 공신호를 받은 이에게 나누어 준 文券으로, 나라에서 내려준 일종의 공문서이다. 즉 이러한 공문서에서 나라의 명령으로 공신의 기록을 지워 없애 버리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림 4>와 같은 경우, 같은 종류의 녹권임에도 공신의 기록 삭적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찾고자 하였으나 공신 기록의 삭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행해졌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공신 기록의 삭적은 공문서 성격을 보이는 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나라의 명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국원중공신녹권』에 보이는 삭적자는 어떠한 이유로 녹권의 기록에서 지워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록』 기사를 찾아본 결과, 1등 원중공신이었던 4명

모두와 2등 원종공신이었던 손유, 유흥조에 관한 기록을 확인했다. 그 기록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削籍者 關聯 『實錄』 記事 內容

날짜			記事 內容
年	月	日	
1506	09	08	공신을 책봉하다
	12	01	좌의정 박원종 등이 유빈·이과·김준손 등의 반정 격문을 사책(史冊)에 적으라 아뢰다
1507	05	17	전 대사성 이과가 병인년 의거 때에 이졸이 고변하려 했음을 논하는 글을 올리다
	06	06	좌의정 박원종·창산 부원군 성희안 등이 이졸의 파직을 청하다
	06	17	병조 판서 유빈 등은 정국공신 4등, 옥과 현감 김개 등은 원종공신 1등에 추가하도록 명하다
	06	18	대간이 합사하여 유빈·이과·김준손 등을 공신록에 올린 것은 그릇됨을 논하다
	06	23	유빈 등은 원종공신 1등에, 김개 등은 원종공신 2등에 올릴 것을 명하다
	08	26	전 우림위 노영손이 하원수 등의 역모를 고변하니, 직접 친문하다
			이과의 공초
			병조 정랑 윤귀수의 공초
		손유의 공초	
1507	08	29	이과·하원수·손유는 능지처사, 윤귀수·신희철·유흥조·유영·윤천령은 결장 1백에 유 삼천리에 처하다
	09	01	역모를 밝히는 데 공이 있는 자를 추서하도록 명하다

李顯은 그의 아버지 李昌臣과 함께 연산군대의 갑자사화 때 전라도로 귀양을 갔다. 1506년, 이과는 연산군을 몰아내려는 군사반란을 계획했다. 전라도에 귀양와있던 柳濱, 광주목사 李茁 등 전라도 관리들과 함께 군사를 모아 전국에 격서를 보냈는데,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에게도 가담할 것을 권유하는 격서를 보냈다. 그리하여 8월 30일, 전라도를 출발하여 한양으로 향하던 중에 9월 1일 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먼저 거사함으로써 연산군이 폐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 1507년 6월 17일에 중증은 이과, 유빈 등의 공을 인정하여 뒤늦게

정국공신 4등에 책봉하였으나 삼사의 여론이 부정적이었다. 결국 6월 23일, 중종은 자신의 명령을 취소하고 이과, 유빈 등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했다. 이에 정국공신에 책봉되지 못한 이과를 중심으로 종친 李繼[河源守], 尹龜壽, 孫洧 등이 불만을 품었다. 이들은 박원종과 성희안을 제거하고 중종을 몰아낸 후 甄城君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를 도모하였는데 이를 8월 26일, 盧永孫이 승정원에 고변을 하였다. 역모에 가담한 자들을 잡아들여 공초를 받아 8월 29일, 이들을 극형에 처하고 정국원종공신의 명단에서 삭제하였다. 9월 1일에 이과의 역모를 막는 데에 공을 세운 자들을 定難功臣으로 책봉하였다.

위의 <표 13>에 나타난 삭제자 13명 중 6명은 『실록』 기사에서 그 삭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외의 7명의 삭제자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과의 역모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일 것으로 추측한다.

5. 結 論

현전하는 조선 전기에 발급된 공신녹권 7종의 체제는 크게 권수·본문·권말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권수는 첫 행,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되었다. 권수제에는 공신도감 발급 녹권은 녹권명을, 吏曹 발급 녹권은 발급기관명을 기재했다. 수급자 부분에서는 이조 발급 녹권은 수급자의 전직 및 검직을 모두 기재한 직함과 성명, 본관을, 공신도감 발급 녹권은 직함을 간결하게 나타냈고 본관은 생략하였다.

본문 체제는 공신책봉과 관련된 봉명일, 봉명자, 반사사유 및 경위,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시행과 관련된 봉명일, 봉명자, 포상규정 및 특전, 이를 시행할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녹권 봉명자의 직함은 대체로 承旨였고, 『개국원종공신녹권』만 知申事로 표기되었다. 이들 승지와 지신사는 조선시대에 공신 책봉 및 녹권 반사와 관련된 왕명을 받아 공신책봉과 관련된 기관에 명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행에 傳旨가 기재되어 녹권의 반사사유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구절 앞의 어구는 반사시기별로 구분된다. 태조-태종대 발급 녹권은 ‘王旨’를 사용했고, 세조대는 ‘教旨’, 성종대 이후 발급 녹권은 ‘傳旨’로 표기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 교지, 왕지, 전지는 모두 왕의 명을 뜻하는 동일한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녹권에서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함에 확실한 기준이나 규칙은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공훈이 큰 고위직의 사람들을 먼저 기재하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관직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곳곳에 같은 성씨를 가진 공신들이 나열되어 조사한 결과,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었다. 또한 원종 공신녹권의 경우, 등급별로 공신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개국원종공신녹권』을 제외하고는 등급별 공신들을 구분하는 것은 이두문을 병용한 ‘…等乙良○○原從○等功臣’을 넣어 각 등급을 분별하였다. 조선 초기 발급 녹권을 제외한 공신도감 발급 녹권에서는 이 부분을 음각으로 처리하여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나, 이조 발급 녹권은 음각이 없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녹권마다 포상규정 및 특전은 모두 수록되었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반사시기에 따라 포상규정 및 특전 항목에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포상규정 및 특전을 시행할 기관은 『개국원종공신녹권』의 경우는 有司가 맡아 보았다. 『좌의원종공신녹권』에서는 議政府, 『좌리원종공신녹권』과 『정국원종공신녹권』, 『광국원종공신녹권』 및 『평난원종공신녹권』에서는 吏曹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권말 체제는 발급기관명, 발급기관 구성원의 직함, 성씨 혹은 성명, 수결로 이루어져 있다. 이조 발급 녹권은 발급기관명을 권수체에 표기하였기 때문에 권말에 쓰지 않았다. 공신도감 발급 녹권의 경우 조선 초기의 것들은 ‘공신도감’으로 표기했고 선조대의 것들은 공신호에 공신도감을 덧붙여 기재하였다. 그 다음 행부터는 발급기관 구성원들의 직함과 성씨 또는 성명을 표기하였다. 이조 발급 녹권은 성씨만을 썼고, 공신도감 발급 녹권 중 조선 초기 녹권의 경우에는 성씨를 기재했

고 나머지 『광국원중공신녹권』과 『평난원중공신녹권』은 성명을 표기했다.

이 연구는 조선 전기에 발급된 원중공신녹권의 체제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을 개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조선 후기에 발급된 공신녹권의 연구에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南權熙. “龍天奇 開國原從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分析.” 『書誌學研究』 第10輯 (1994). 391-424.
- 朴文烈. “平陵君 申景禧 平難原從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人文科學論集』 第31輯 (2005). 185-209.
- 朴鳳淑. “開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7輯(1991). 257-289.
- 朴鳳淑. “朝鮮太祖朝 開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1987.
- 朴天植. “開國功臣錄券의 檢討; 張寬開國功臣錄券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第38號(1984). 184-211.
- 송일기, 진나영. “『光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211-240.
- 송일기, 진나영. “『佐理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427-456.
- 송일기, 진나영. “佐翼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2008). 391-415.
- 송일기, 진나영. “평난원중공신녹권의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50輯(2011. 12). 275-315.
- 林基榮. “壬辰倭亂 直後 賜給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書誌學研究 第64輯(2015. 12)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2.

진나영, 송일기. “靖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4호(2012. 11). 27-60.

千惠鳳. “金天理 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考察.” 『한국비블리아』 第6輯(1984). 111-131.